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5년 하반기 개정판)

Part 2-1.

공정거래법 해설

(부당공동·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영업·재무·구매·수행

Copyright © 2025 Hanwha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사전 안내 사항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한화시스템(주)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법규들을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은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본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하시어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편람을 참고하시되, 상세 업무 추진은 반드시 회사 공정거래 담당 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NDEX

Part. I. 공정거래법 해설

0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2. 부당한 공동행위
- 1.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Part. II.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01 체크리스트 안내

0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Part.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0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I. 공정거래법 해설

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4. 부당지원 행위 규제
- 1.5.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1.1. 공정거래법의 의의

- 정식 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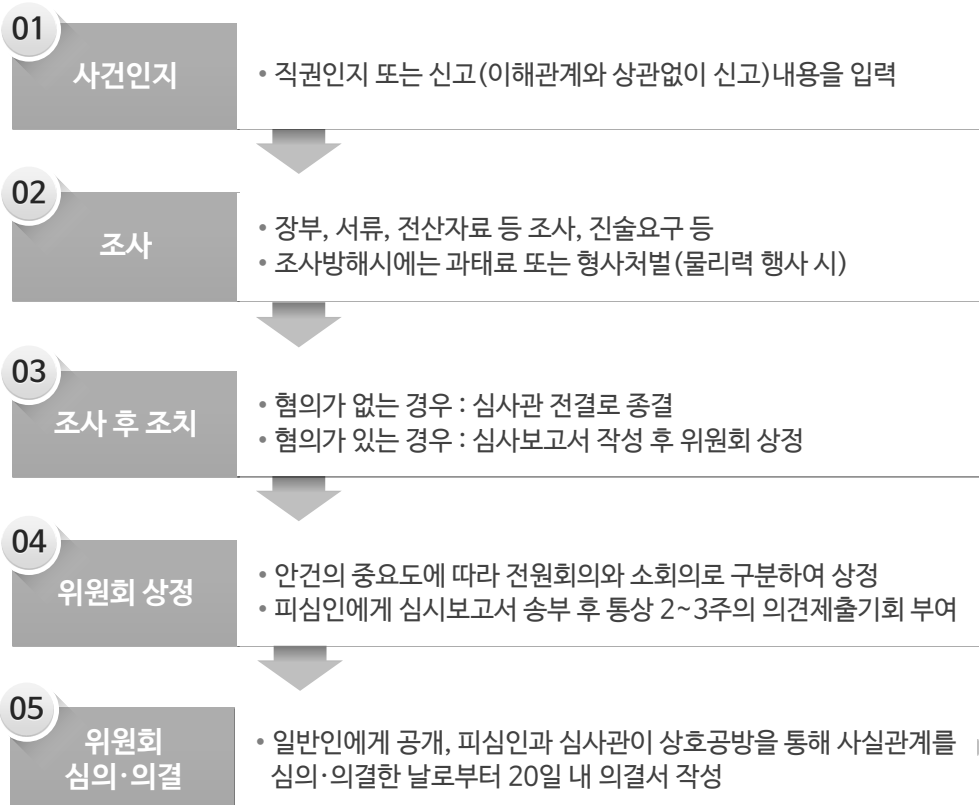
1.1.2.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의 측면과 ‘거래 행태’의 측면에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1) ‘시장구조’를 규율: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9조(기업 결합의 제한)

예2) ‘거래행태’를 규율: 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1.1.3.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및 심사 절차



• 불복 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1.4.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이 존재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조항 중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존재
 - 위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의무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공정거래법 제129조

-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부당공동행위, 보복조치 등 특정 규정 위반 시 실 손해의 3배 미만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담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1.5. 공정거래법과 이해관계자

- 공정거래법상 당사 이해관계자는 정부, 주주, 고객, 협력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유형별 이해관계자 및 당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 조항, 당사의 법 위반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예시	준수 필요 사항	발생 가능 피해
정부	공정위		-
주주	당사 주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상호출자 제한 규제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고객	방사청, 국과연, 계열사 포함 전체 매출 거래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협력사	계열사 포함 매입 거래처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법 위반 시 조사협조 등	• 공정거래법상 처벌 ✓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공표 ✓ 영업정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금전적·업무적 피해
기타	공정거래조정원	CP 등급평가 규정	• 허위·부실 평가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및 금지 유형

- 의의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물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 등의 명칭으로 알려짐
- 금지 유형: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규정

▶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

- ① 가격결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 결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 ③ 생산·출고등 제한 :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 거래 제한
- ④ 거래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⑤ 시설투자 제한 :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 ⑥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 규격의 제한
- ⑦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
- ⑧ 타사업자 방해 :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⑨ 정보교환 :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2. ‘합의’의 의미 및 실행 행위

-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합의는 구두합의와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이나 협정 등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사업자간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
 - 또한,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다른쪽 당사자는 당해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제재될 수 있음
- 합의의 추정(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음이 입증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요인이 없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가격이 동시에 인상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의 일치가 어려움에도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2. ‘합의’의 의미 및 실행 행위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합의 추정의 반복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반복 가능

외형상의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단순 우연, 행정지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른 외형상 일치의 발생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경에 사업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3.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Leniency제도)

- 의의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감경 또는 면제 대상

자진 신고자(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아래 4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조사 협조자(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 협조한 자 (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② 위 자진 신고자 조건의 ①, ③, ④를 충족할 것

기타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과징금 50%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위 조사 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시작 후 조사 협조자(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②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항목의 ③, ④조건을 충족할 것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4. 부당 공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시정명령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합의의 파기를 명령

과징금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의 과징금을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2025년 최신 사례 모음. 클릭 시 보도자료 원문으로 이동)

[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25.01.22.)

과학기자재 제조, 납품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간 총 89건의 공공기관 발주 입찰 참가 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1.52억원 부과

[공정위] 20개 시스템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 제재(25.02.14.)

20개 가구사가 총 190건의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 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183억원 부과하고, 4개사 고발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25.03.12.)

이통 3사가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원 부과

[공정위] 대구 경북지역 9개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4.03.)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5억원 부과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3.31.)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판매가격 공동 인상 합의, 실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 부과

[공정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6.17.)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약 6년간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0.7억 원 부과

[공정위] 4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7.31.)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약 1년 5개월 간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 원을 부과

[공정위] 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10.21.)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원 부과

[공정위] 차량용 에어컨 구매입찰 관련 담합 제재(25.12.02.)

차량용 에어컨 부품입찰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24개 사업자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사건('21. 7. 26.)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外

✓ (주)삼일씨엔에스 외 23개사는 '08.4.~'17.1.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 하는 방식으로 6,500억원 규모 담합 실행

** PHC 파일: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24개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 6개사, 중소기업 18개사

(제재)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018억 부과

[PHC 파일 입찰 담합 관련 제재 경과]

- '16.1. 공정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과징금 5억 부과
 - 비회원사의 신기술 적용 방해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 '16.7. 검찰, 입찰방해죄 등으로 23명 기소 → '17년 유죄 확정
 - 협동조합 임원 3명(구속), 업체 대표 3명(구속) 및 임직원 17명(불구속)
- '17.1. 공정위, 입찰 담합 조사 개시
- '20.6. 공정위, '관수 시장' 담합 건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4억 부과
- '21.7. 공정위, '민수 시장' 담합 건 제재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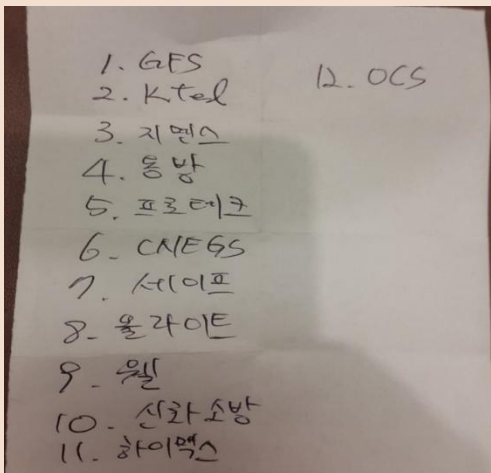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23개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사건('21.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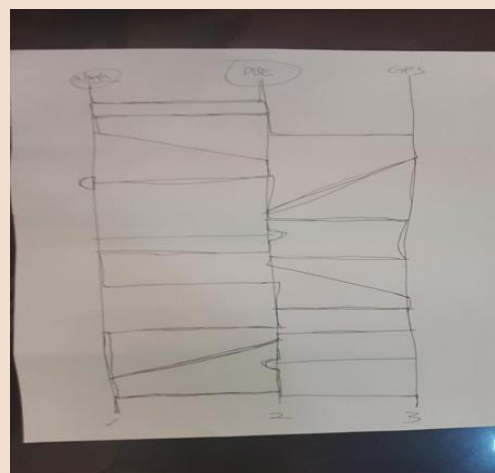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 ✓ 지멘스(주)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사가 6년간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
- ✓ 23개 담합업체들은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 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 입찰별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를 결정

* 롯데건설 사례(광명 아울렛 등 16건)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낙찰 순번 결정



* 한라 사례(송도 현대아울렛 등 4건)
: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 순번 결정



(제재) 23개사 모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 회생절차를 거친 (주)우창하이텍을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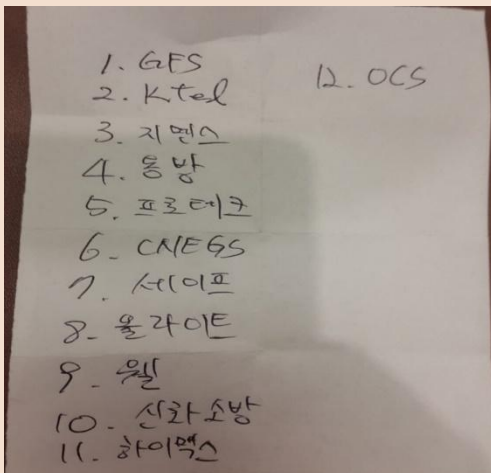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23개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사건('21.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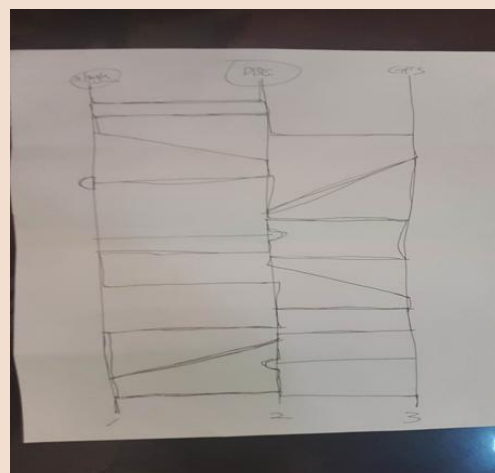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 ✓ 지멘스(주)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사가 6년간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
- ✓ 23개 담합업체들은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 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 입찰별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를 결정

* 롯데건설 사례(광명 아울렛 등 16건)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낙찰 순번 결정



* 한라 사례(송도 현대아울렛 등 4건)
: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 순번 결정



(제재) 23개사 모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 회생절차를 거친 (주)우창하이텍을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사건(’21.11.17.)

• 법 위반 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금지’ 위반

-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 위해 ’10. 3. ~ ’19. 6.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

** 담합 내용 상세

1. (’10년 담합) 연체료 공동 도입 및 연체료 수준 합의, 실행
- 연체료율: 연체 대금의 2%
2. (’12년 담합) 연체료율 공동으로 5% 인상 합의, 실행
3. (’13년 담합 및 이후) 정부/언론의 인하 압력 공동 대응, 기존 담합 내용 최대한 유지, 인하 시는 연체료율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합의, 실행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9.3억원 부과,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성실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단위: 백만원)
1	KG모빌리언스	8,752
2	다날	5,387
3	SK플래닛	855
4	갤럭시아	1,941
합계		16,935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6조 8,442억원 규모 철근 관급 입찰담합 사건 수사 결과('22.12.21.)

- 서울중앙지검, 7대 제강사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 사건 결과 제강사 임원 등 3명 구속기소, 나머지 가담자(19명) 및 7개 제강사 법인 각각 불구속 기소
 - ✓ -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으로,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
- 사건 내용
 -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12. 8. ~'18. 3.간 조달청 발주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 수사의의
 - 법인 벌금형 또는 공정위가 고발한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치던 기존 담합수사와 달리, 이 사건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을 추가로 밝혀 고발 요청
 - 검찰, 조달청과 논의 통해 아래의 국고 회복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① 피해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청구 절차 본격 진행
 - ② 관수철근 입찰방식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변경, 가격자료 제출 절차·요건 세분화
- 검찰 향후 계획
 - 담합 가담 법인뿐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담합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23.10.18.)

- 공정위,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
 - 원자재 비용 오를 땐 가격 올리고, 원자재 비용 내릴 땐 가격 유지하기로 하는 행위 등 합의
- 담합 배경
 -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
 -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
 - 하지만, 원자재 가격하락이 상당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제강사는 수요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시작
- 법 위반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 이 사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를 기회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
 - **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하여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
 - ** 그 외, 일부 제강사간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
- 담합 효과
 -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 (660 → 1,460원/kg)까지 급격하게 인상
 - 그 밖에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6. 부당 공동행위 FAQ

Q1

- 업체 관계자들끼리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

A1

-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협정·동의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예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 개의 회사가 모두 본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업체들이 순차적 의사 연락에 따라 일정 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음(서울고법 2016.10.7. 선고 2014누70442 판결)
- ✓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암묵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가격 의사 교환 행위 자체가 암묵적 가격 합의 등으로 비춰질 소지 존재(공식 회의 여부는 불문)

Q2

-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려는 경우와 같이, 실제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담합이 성립하는 것인지?

A2

- ✓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음
- ✓ 따라서,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제품 분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 할 것임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COD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제조사 및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4.07.25.)

- (담합 배경) 2022년 6~7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58억 원 상당의 물량을 3~4개월 납기의 긴급 입찰 5건으로 발주하자, 8개 제조사 및 피이관 조합 소속 임직원들은 대규모 물량 및 짧은 납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차례 회의를 진행

- (담합 내용) 모든 담합 관련사 임직원이 참석한 회의 결과, 7개사는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조합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는 들러리로 입찰 참가하기로 결정

- (담합 결과) 피이관조합을 낙찰예정자로, 제이알테크를 들러리업체로 한 합의대로 이 사건 입찰 5건에서 제이알테크는 피이관조합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피이관조합은 유찰 없이 모두 낙찰. 또한, 피이관조합으로 입찰에 참가한 7개사는 사전에 결정된 물량을 배분받음

그 결과, 담합 발생 이전 조달청 입찰(2017~2022년)에서 88% 수준이었던 낙찰률이 이 사건 합의 기간 동안 91~99% 수준으로 상승하여, 담합 가담자들이 수의계약을 회피함으로써 높은 낙찰가를 형성한 점이 확인되었음

- (제재) 담합 가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57억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6. 부당 공동행위 FAQ

Q3

-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3

✓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경우에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 ③ 불황극복 : 특정 상품 또는 용역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력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舊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면 됨



1. 공정거래법 해설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6. 부당 공동행위 FAQ

Q4

- 정기적인 동종업계 영업 담당자 모임에 참가하였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타사 담당자들간에 물품 가격과 물량에 대한 담합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즉시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음.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A4

-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있는 행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함
- ✓ 경쟁사업자간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범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범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 ✓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법무, 기획 등 전문 유관부서와 빠른 상호 협조 필요)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1.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개요

■ 의의

- 불공정 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 행위(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 행위(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한거래를 해칠 우려”를 “부당하게”와 같은 의미로 해석
-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거나(경쟁제한성),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함(불공정성)을 포함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1.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개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 ‘공정거래 저해성’(법 제45조 제1항 본문)·‘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경쟁 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의미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2.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거절)

▪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단독 거래거절

-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용역 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

- ①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②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③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 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위반 유형

- 공급·구입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부품 제조업자가 완제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

-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거절에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3.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차별적 취급)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으로 거래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것

가격·거래조건 차별의 예시

-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4.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부당염매

-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부당한 고가 매입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5.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위법 행위 유형

- 자기 상품을 구입하도록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하는 행위
-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자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행위 유형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판매)
-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6.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입강제

-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6.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 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경영 간섭

- 임직원 선임·해임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7.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구속 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계약을 모두 포함.
 - 경쟁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 시 경쟁사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그 밖의 사업방해 활동 네가지 유형이 존재

사업활동 방해 유형

- 기술의 부당 이용
 -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 *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 * 한편,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상당한 매출액 감소, 거래상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 이 때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 한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7.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사업활동 방해

사업활동 방해 유형

- 거래처 이전 방해
 - 상대방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 여기서 사업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 위 행위 외, 자기 능률·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달을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8.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형사처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 가능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검찰청]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유인) 사건 수사결과 ('25.05.01.)

- 공정위 고발 건 관련 쿠팡 및 자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해당 2개사 불구속 기소.
- 쿠팡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직매입 상품 및 PB상품은 실제 순위를 무시한 채 검색 시 랭킹 상위에 고정 배치하고, 검색순위 산정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음을 확인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쿠팡 내부자료>

○ 배경: ...(중략)... 인위적인 부스팅으로 인해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Product Promotion은 올해 기점으로 종료를 목표로 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랭킹 로직을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랭킹으로 올리다 보니 많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최종적으로 프로모션의 지원 대신 검색 로직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되는 PL상품들이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의 상위 랭킹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 솔루션을 고안한다. 단기적으로는 노출될 검색어와 SRP 랭킹을 매뉴얼로 지정하여 PL상품의 랭킹을 부스팅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타이틀, 서치태그, 브랜드, iCateTag)를 활용하여 노출된 검색어와 SRP 랭킹까지 자동화한다.

* SRP: Search Result Page(검색 순위 화면)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2개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거래거절 사건('17. 1.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기타의 거래 거절'

- ✓ 한국조에티스(주), (주)벨벳은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차단함
- ✓ 이러한 약품 공급의 차단은 해당 약품이 싸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
 -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음

(제재) 위 2개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 조건부 거래 사건('17. 1.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 조건부 거래'

- ✓ 위 거래거절 사건 관련,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은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
 - 약품 공동구매, 불매운동 추진 등을 빌미로 제약사 등을 압박
 - 이에 제약사 등은 더욱 동물병원에서의 공급 거절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수 밖에 없었음

(제재) 해당 수의사들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울산 향운노조의 경쟁 노조 사업활동 방해 사건('21. 3.18)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 울산 향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던 중, '15.8. 온산 향운 노조가 추가로 공급사업 허가 받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농성용 텐트·차량·조합원 등 동원하여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경쟁자 작업장 진입을 방해 → 온산 노조는 부두 진입 불가로 관련 하역 작업 중단 및 고객과 계약 해지

(제재) 울산향운노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21. 6.23.)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현대건설기계는 '09. 6. ~ '16. 2.동안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

✓ 위법성 판단

(거래상지위)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짐

(부당성)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함

(제재)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55억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3. 9.22)

- 공정위,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 적용 법규: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 행위 배경

- 삼성전자, 부품공급 다원화 전략하에 갤럭시 S20에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 제품을 채택, 브로드컴은 수차례 강한 불만과 큰 실망을 표현

〈브로드컴 CEO가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보낸 전자메일 발췌〉

I am so disappointed to have confirmed today that the RFFE socket in the GS11 for North American markets has been awarded to my hated competitor ○ ○ ○.

-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자신이 삼성전자에게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타 부품까지 독점하기 위한 LTA 체결 전략을 수립

✓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LTA 체결을 압박
- 선적 중단 및 구매주문 미승인 등으로 인한 심각한 공급차질로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6억 달러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7.6억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24.07.29.)

- (행위 내용)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은 4개 협력업체와 2019. 1월경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 중인 2020.1.1자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10%씩 인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들의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수수료 총 1.23억원을 감액

또한, 씨씨에스는 2019. 1월경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 유치 등의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한 위탁업무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감액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해지를 압박

- (제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불이익제공) 1,100만 원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Q1

-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A1

- ✓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
- ✓ 공동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됨
- ✓ 기타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 배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인정

Q2

-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

A2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따라서,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인센티브 성격) 하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차별 행위는 부당 차별취급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Q3

-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A3

- ✓ 사업자는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처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 ✓ 다만, 부당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는 공정 거래 저해 우려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됨
-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 따라서,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을"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갑"의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였다면 부당 거래거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Q4

- 회사 업무를 타 회사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A4

- ✓ 경영간섭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경영간섭 부당성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영간섭의 내용이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 해당 업무를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Q5

- A회사는 경쟁 사업자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지?

A5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두어 금지하고 있음
- ✓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함
- ✓ 예로, 치약제조사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하고 있음
- ✓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의 경우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 따라서 A회사가 부당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의미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①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 행위 유형

부당한 자금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상품, 자산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용역·상품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 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타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타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자금거래의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이러한 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지원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구체적 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 계열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 주식매입 앞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사에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 중 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구체적 예시(1)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구체적 예시(2)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함.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에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에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 산식: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 × 임대일수 × 정기에금이자율/365 = 해당기간 정상 임대료

- 구체적 예시

- ❖ 지원객체에게 공장 · 매장 ·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 ·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 ·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 상품 · 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 · 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 구체적 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 ·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 · 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 · 용역의 내용 · 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부당한 상품, 용역 거래 구체적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인력 지원 행위 중 전자의 경우에는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

- 부당한 인력 제공 구체적 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의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 구체적 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2. 부당한 지원 행위의 판단

- 부당성의 판단기준
 - 부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 지원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 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이러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 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 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 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2. 부당한 지원 행위의 판단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해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절차 통해 지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3. 부당한 지원 행위 제재

시정명령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양벌규정)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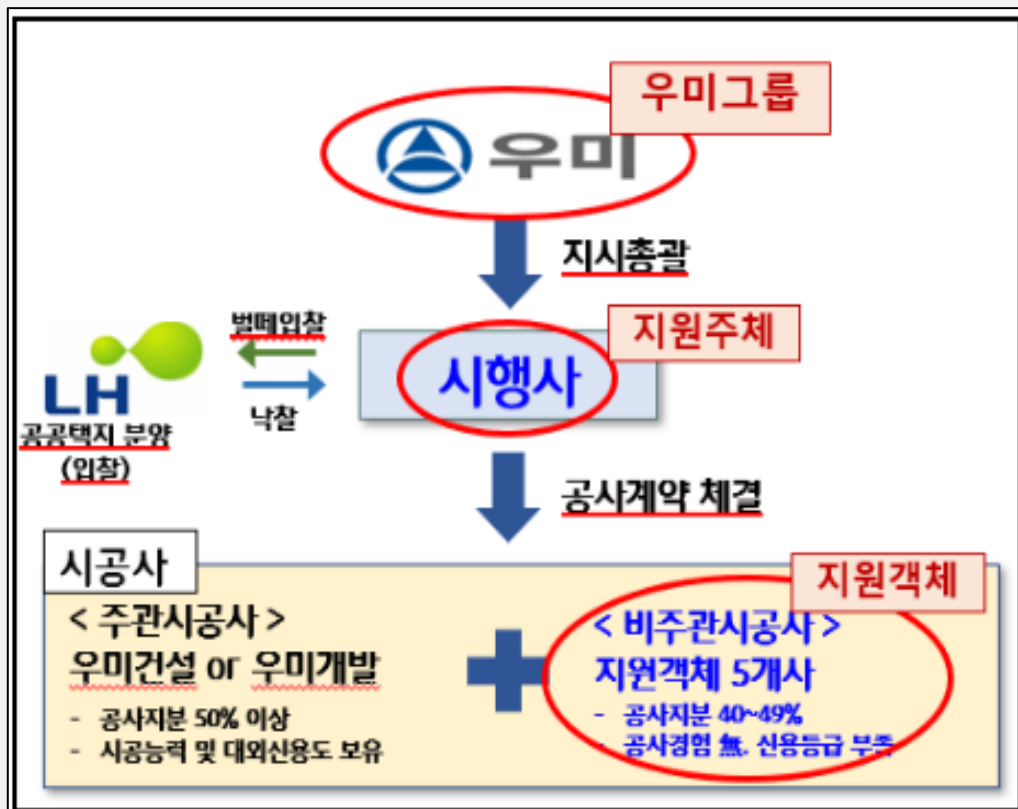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기업집단 「우미」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5.11.17.)

▪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원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

- LH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하여 주택 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기존 벌떼 입찰 활용 계열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 객체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

〈이사건 부당지원 행위 구조도〉





1. 공정거래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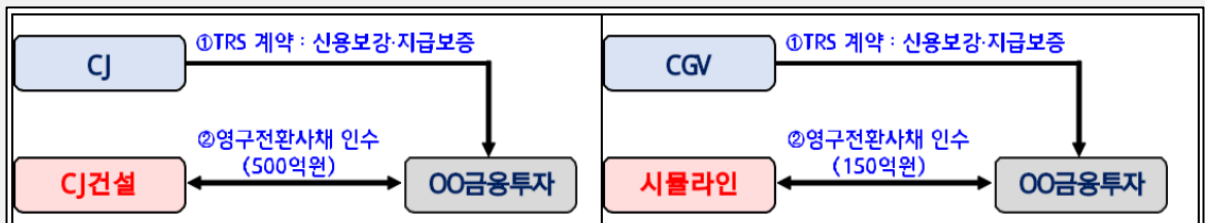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기업집단 「씨제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5.07.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 및 씨제이씨지브이(주)가 각각 총 수익 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심각한 재무적 위기상황에 빠진 계열회사 씨제이건설(주) 및 (주)시물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총수익스와프(TRS):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예: 주식,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 영구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하게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

〈이 사건 부당지원 행위 구조도〉



〈이 사건 동일인(기업총수) 부당지원 행위 내부 문건〉

- 당사자 투자에 대하여 가중이익을 보장하는 점 당사자 수익을 얻을 기회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RS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보다는 지급보증과 유사한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 CB 인수 계약상 만기는 30년이나, 차액정산 만기에 실질적 상황이 이루어짐

*2) 차액정산 의무자 회사채 시장금리(개별만평) + 발행사 업종별 Spread

2) Hybrid CB 개요

- 주요 발행조건

구분	내역
금액	500억원
만기	30년(만기 연장가능)
조기상환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실질적 만기



1. 공정거래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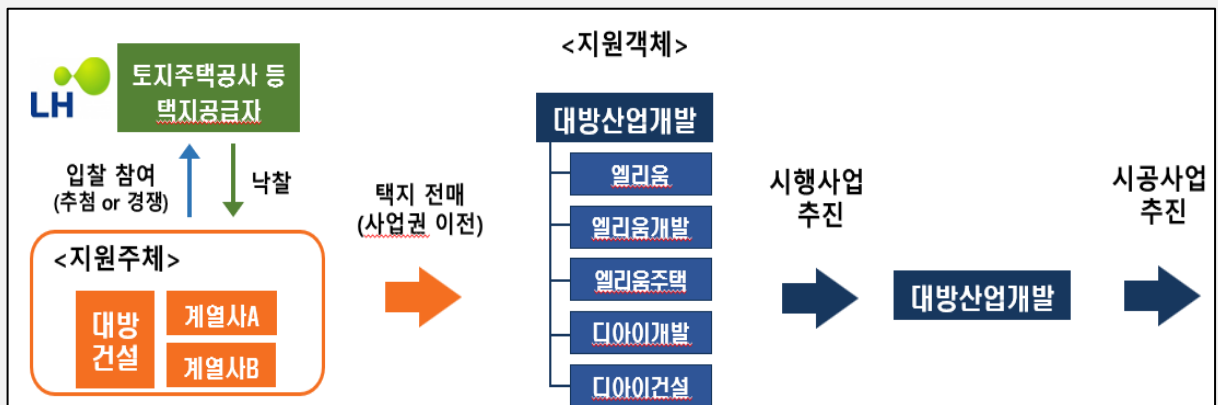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25.02.25.)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한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주)의 5개 시행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

〈이사건 부당지원 행위구조도〉



〈이사건 동일인(기업총수) 부당지원 행위지시 문서〉

2. 시행내역 : (회장님 지시) 내포1,2차를 대방산업개발 계열사 5개사로 토지전매 시행
(표1) 중남내포1,2차 사업주체 변경

현장	사업주체	
	변경전	변경후
중남내포1차(RM9블록)	대방건설(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3개사(A,B,C)
중남내포2차(RH5-1블록)	대방주택(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3개사(C,D,E)

결재 신청서

날 짜	2018. 12. 04.	결 재	단 장	부서장	비서실	
법인명	대방건설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부서명	자금부					

2018/12/04 12:04:12 / 2018/12/04 12:04:12 / 2018/12/04 12:04:12 / 2018/12/04 12:04:12 / 2018/12/04 12:04:12

순서	내용	지시사항
1	주주 대출금 상환 건 7건	주주 대출 전액 보고 (기 백업)
2	[대방건설] 2018년 11월 자금 종합 계획 확정 보고(2018.11.25보고)	동원3차 계약금회계상 처리형 검토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와인 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 사건('21. 4. 8.)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제2항 ‘부당지원 제공 및 수령 행위 금지’
 - ✓ 롯데칠성(주)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 ✓ 자회사 JMA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롯데칠성의 부당지원 행위 상세

지원 행위	내용
와인 저가 공급	•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
판촉사원 비용 부담	•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 용역비)을 롯데칠성이 부담 ☞ 롯데칠성이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 ※ 롯데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사항
모회사 인력 제공	• 롯데칠성 직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 • MJA는 위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롯데칠성에 지급하지 않음

※ 위 부당지원 행위의 결과로, MJA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

(제재) ①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3개 지원 행위), 행위 중지 명령(인력제공 限)

② 과징금 총 11.85억원(롯데칠성 7.07억/MJA 4.78억) 부과

③ 법인 고발: 롯데칠성(주)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SK텔레콤의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사건('21. 7.14.)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 ✓ SK텔레콤(이하 ‘SK’)은 ‘09. 1. 자사 음원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양도.
 - ✓ ‘멜론’ 운영주체가 SK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타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
 - ✓ SK는 로엔의 ‘09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타 음원사업자와 유사한 5.5%로 적용했으나, ‘10~‘11년에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1.1%로 인하하여 로엔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미수취. 이후, 로엔의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화 되자, SK는 수수료율을 ‘09년과 같은 5.5%로 재인상하여 지원 행위를 종료
- ❖ 한편, SK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SK 내부자료 발췌】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

(제재) SK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1.10.27.)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 행위 및 통행세 거래', 제23조의2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금지'

- ✓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 위해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2세에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 하에 물품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1) 舊 한국쌈뽕판매(주)('13년에 舊 올품 흡수합병 후 올품으로 사명 변경).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

❖ 지원 내용

* 고가매입행위

-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계열사들은 약 4년간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거래

- ✓ 계열사료회사들의 기능성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5년간 거래상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저가매각

- ✓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주))는 '13년에 본인 보유 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쌈뽕판매(現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 舊 올품 주식 저가 매각으로 인해 올품에 약 27억원 부당지원

(제재) (주)올품 및 8개 계열사 과징금 총 48.88억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주)SYS리테일 [舊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21.12. 1.)

- 법 위반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3조 제2항 '부당지원 행위'
- ✓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주)SYS홀딩스는 계열사 (주)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 (주)SYS리테일은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주)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제공을 요청
 - 2) 이에 (주)SYS홀딩스는 (주)SYS리테일이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20년 기준 담보물 평가액 약 3,616억원)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
 - 3) 그 결과, (주)SYS리테일은 은행으로부터 약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 이상 총 195회에 걸쳐 저리(1%~6.15%)로 차입하여 상품 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

〈부당지원 행위 상세〉

거래명	지원 기간	적용 법조	비고
전체 대출	'09.12.~'21.11.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7호	지원 주체
신한은행 500억원 대출(650억 담보)	'14.5.~'18.9.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②항	지원 객체
신한은행 200억원 대출(260억 담보)	'14.12.~'18.9.		
신한은행 700억원 대출(910억 담보)	'18.9.~'21.11.		
그 외 대출	'15.2.~'21.11.		

- 제재

1)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2) (과징금) 총 23.68억원 (잠정): (주)SYS홀딩스(7.45억원), (주)SYS리테일(16.2억원)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 회장 비리 사건 수사 결과('23. 3.27.)

- 서울중앙지검, 한국타이어 회장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 ✓ 회장 구속기소, 임직원 2명 및 법인 불구속 기소
- 주요 혐의
 - 1)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높은 단가 테이블 적용
 - 2) 회사재산 사적유용 등 개인 비위
 - 법인차량 사적 사용: 회사 명의 리스차, 회사 소속 운전자 사적용도 활용
 - 이사비 대납: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을 해외파견 직원의 귀임비에 반영
 - 가구비 대납: 개인 가구비를 회사 신사옥 건설 시 가구대금에 합산
 - 그 외 법인카드 사적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

〈피고인 명단〉

	피고인(나이)	지위	죄명	처분
1	ㄱ○○ (51세)	A회사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u>구속 기소</u> (3. 27.)
2	ㄴ○○ (57세)	A회사 상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기소 (1. 26.)
3	ㄷ○○ (43세)	A회사 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불구속 기소 (3. 27.)
4	A 회사	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기소 (1. 26.)

1.4.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24.08.08.)

- (행위 배경) (주)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자 하였음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 시키고 계열사 유증참여, 일감을 몰아주기 등 방법을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크게 증가

- (행위 내용) 삼표산업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에스피네이처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구매하고,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 단위 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되,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4% 이상 발생 시 4%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

그런데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모든 분체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

이러한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의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지원결과) 에스피네이처는 본건 지원행위를 통해 정상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해 74.96억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이는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1~9.6%에 이르는 수준
- (제재)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각 67.47억원, 48.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4.08.13.)

- (행위 배경) CJ프레시웨이(주)(이하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하였음

이를 위해,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력지원을 계획·실행

- (행위 내용) 프레시웨이는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2024. 6. 30. 까지 프레시원에 자사의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하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파견인력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되어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

- (지원결과)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의 풍부한 업무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외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사업 초기부터 현저히 유리한 경쟁조건 획득

또한, 이러한 인력지원은 일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발생

-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총 245억 원(프레시웨이 167억 원, 프레시원 78억 원)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4.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제일건설(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4.10.30.)

- (지원 배경) 중견 기업집단인 「제일건설」 그룹 소속 제일건설은 그룹 내 시공법인 중 PF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음

반면 총수일가 100% 보유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그 완전 자회사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실적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한계가 존재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건설실적 제고 목적으로 두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

- (지원 내용)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 원과 848억 원의 시공매출을 거두었으며, 제이제이건설은 138억 원, 제이아이건설은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
-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총 96.89억 원
 - 제일건설(48.45억), 제이제이건설(31.48억), 제이아이건설(16.96억)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5. 부당지원 행위 FAQ

Q1

-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는지?

A1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
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Q2

-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에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는지?

A2

- ✓ A회사가 B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은 2004.11.12. 선고2001두2034 판결에서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사이의 지원 행위도 부당지원 행위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5. 부당지원 행위 FAQ

Q3

- 용역 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는지?

A3

- ✓ 부당지원 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라 할 수 있음
-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 자금지원 행위 해당 가능

Q4

- 계열사 거래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 행위가 되는지?

A4

- ✓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1) 지원 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함
 - 수의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있어야 함
 - 예)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
 - 2) 당해 지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부당성)
 - 공익 목적의 수의계약인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 부당성 판단은 지원 주체·객체간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1. 공정거래법 해설

1.4. 부당지원행위 규제

1.4.5. 부당지원 행위 FAQ

Q5

- 계열사간 거래가 대규모로 이뤄지거나, 타사와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예외는 없는지?

A5

- ✓ 부당지원 행위는 말 그대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계열사나 타사에 대한 지원행위라 하여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 다만, 이 경우 그 ‘정당함’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여야만 함
-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 1)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2)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3)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5)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7)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요

■ 요건

- 제공주체 및 객체

- 이익제공당시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 특수관계인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 단,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되,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기준

- 이익제공행위

- 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짐
- 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
- 다음의 경우에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음

-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 수익 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금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의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음
- (판단기준)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로서의 자금거래의 종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가 부당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 계열투자신탁사가 고객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 명목으로 제공객체에 무이자·저금리로 자금 제공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 단체 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 저금리로 대출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 보유 중인 제공객체 발행주식 배당금을 정당 사유없이 미수령 또는 수령을 게을리 한 경우
-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개별 정상금리 계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개별 정상금리 판단 기준)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함

- ❖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1)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예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제공객체에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제공객체 발행 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기업어음 고가매입]
-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2)

- (판단기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

*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가능

다만, 사업자가 자산·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님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적은 때에 성립

-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거래로 볼 수 있음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적용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거래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사업 기회의 제공

- (의의)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

·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
- ☞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님
- ☞ 또한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
- ☞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

- (적용제외)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의의)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 * 경쟁입찰 거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제안서를 제출받고(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 * 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는 각 회사 거래금액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는 상당한 규모 미해당 간주

☞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거래 총액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총액 계산 시 상호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거래비중 요건은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 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봄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효율성 · 보안성 · 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됨
 -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함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거래 예시

- 상품의 규격 · 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 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 · 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 · 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기획 · 생산 · 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주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회사의 상품 · 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 · 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회사의 상품 · 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 ·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상품 · 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사와 관련 상품 · 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여야 함.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미포함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의미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거래 예시

-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
 -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합리적 고려·타 사업자와의 비교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
 - 이러한 필요는 통념상 대체 거래선 수배에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봄

거래 예시

-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1.5.4.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형사처벌

- 부당지원 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다른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1. 공정거래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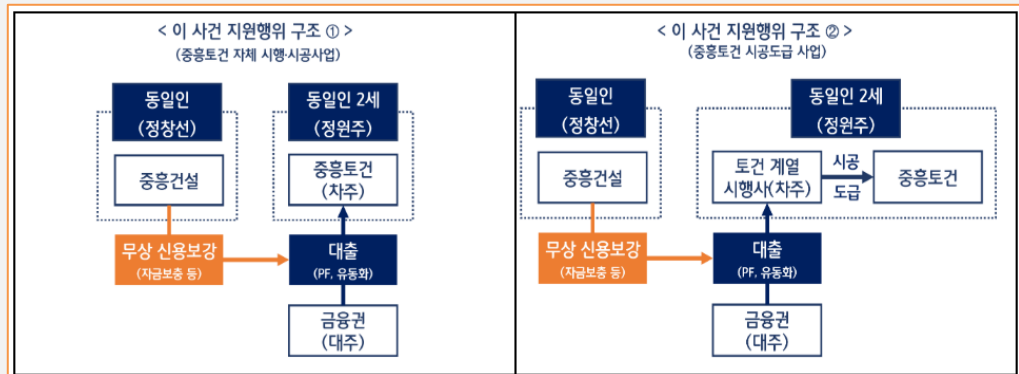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사례

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사익편취및 부당지원행위 제재(25.06.10.)

- 동일인 2세 소유인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에서 중흥건설이 각 시행사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지원주체 중흥건설 고발
- ✓ 중흥토건은 경영권 승계 목적 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 사건 무상 신용보강 행위 구조도〉



〈중흥건설 내부 의사결정 자료 발췌〉

2. 시공실적

중흥건설	3천억원대 매출을 지속적/반복적 유지
중흥토건	주력기업. 매출 집중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영업부 협의하에 작성

-> 가급적 시공사는 중흥토건, 시행사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매출로 인식

-> 관급/사급공사는 예상매출액 및 원가산정하여 예측치로 입력

-> 시공사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대책 수립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비과세 유지

연도별 일정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초과시 조정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사례

한국타이어그룹의 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에서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22.11. 8.)

• 적용 법조

- 부당지원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사익편취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

• 법 위반 내용

-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14. 2.~'17.12.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인 한국프리스전웍스를 지원함
 - *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외형상 매출 이익율(25%)보다 높은 매출 이익률(40% 이상)을 실현하도록 설계
- 이 사건 지원 행위로 한국프리스전웍스는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스전웍스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음
 - ☞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간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제재

- 2개 사업자에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80억원(잠정) 부과
- 한국타이어 고발 결정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사례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사건('21.12.22.)

- 법 위반 행위: 舊 공정거래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 경과

- ① SK(주), (주)LG가 보유하던 舊 LG 실트론[現, SK실트론] 주식 70.6% 매입
- ② 동일인 최태원, SK(주) 월간 회의에서 LG 실트론 잔여 지분29.4% 매각 입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입찰 참여' 관련 검토를 지시
- ③ SK(주), LG 실트론 잔여 지분 미인수 방침 발표. 이후 동일인 최태원이 해당 잔여 지분 입찰 참가 후 취득

✓ 공정위 판단

- LG 실트론 잔여 주식 29.4% 취득 기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에 해당
- SK(주)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동일인 최태원의 위 잔여 지분 인수 행위를 묵인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동일인)에 제공' 하였음
 - ※ SK(주)는 최태원 개인의 거래임에도 잔여 지분 인수 전 과정에서 본인의 비서실,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이 해당 거래를 지원토록 하였음
- 따라서, SK(주)/동일인 최태원의 본건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사익편취)규정 위반에 해당

- (제재) SK(주), 동일인 최태원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사례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제재 (23. 9.25.)

- 공정위, 기업집단 세아 소속 (주)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주)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주)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

✓ 지원 배경

- (주)세아창원특수강은 (주)CTC의 세아그룹 편입 전부터 (주)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개인회사 (주)HPP가 (주)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 (주)CTC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주)CTC를 지원

✓ 지원 방식

- (주)세아창원특수강, (주)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주)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
- (주)세아창원특수강은 (주)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할인제도를 설계하였고, 이 사건 물량할인은 (주)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가간이 설정

〈세아창원특수강 대표이사 지시사항(2019. 1. 29.)〉

1/28(월)에 있었던 CTC 사업계획 보고결과 중 창원특수강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드립니다.(사장님 지시사항)

2. CTC는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18.3Q~4Q 적자)

• 적용법규

-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같은 조 제2항(지원객체에 관한 규정)
-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같은 조 제3항(제공객체에 관한 규정)



1. 공정거래법 해설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5.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FAQ

Q1

- 신제품 광고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A1

- ✓ 반드시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 검증된 외부 회사와 거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 어려움

Q2

- 신제품 출시 이전에는 관련 정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판촉물의 제작 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한 경우 보안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가능한지?

A2

- ✓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가 가능하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3

-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긴급히 업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A3

- ✓ 납품기일은 회사 외적인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미해당하므로,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II.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안내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2.1. 부당공동행위(일반) 분야
 - 2.2. 부당공동행위(담합) 분야
 - 2.3. 일반 불공정행위 분야
 - 2.4. 부당지원 행위 분야



1. 체크리스트 안내

-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 - Tool 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처리 바랍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신 후 해당 체크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jangsw@Hanwha.com) 앞으로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 및 검토 요청 사항, 간략한 사실관계, 질의 사항 등을 송부하여 주시면 검토 후 의견 및 향후 필요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1. 부당공동 행위(일반) 분야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협회 등 참석	- 동종업계 협회, 사업자단체 등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가 언급 된 적이 있는가? - 해당 주제 언급 시 관련 협의 또는 합의가 진행되었는가? - 협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찬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직접 접촉	- 경쟁사와 정기/비정기적인 교류나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 -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로 협의/합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 협의/합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협의/합의시 찬성 하거나 의사표시 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와 만날 수 밖에 없는 공식적인 회의 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가격정보, 조건 등을 교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합의(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 내용을 당사의 가격 등 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
	원재료 공급업체(또는 협력업체)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폭을 정하거나,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간접 접촉	- 직접적인 교류 외의 방법(전화, 팩스, 이메일, 영상미팅 기타. 이하 '간접 접촉')으로 경쟁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 간접 접촉 시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간접 접촉 시 주고받은 정보가 당사 가격결정에 반영된 적이 있는가?
자료 점검	당사 내부 문건(보고서, 회의록, 배포자료 등) 작성시 경쟁사와의 "협력",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공문, 이메일, 팩스 기타 방법으로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건에 "가격 등" 결정을 위한 요청사항이나 협의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가격협의,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이 적힌 이메일, 수첩, 달력, 메모 등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2.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2.2.1. 자율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입찰가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한 적이 있는가?
	• 타 사업자와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 교환·제공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한 적 있는가?
	• 입찰 참가 시 타 사업자 산출내역서를 복사·대신 작성해 주는 등 방법으로 입찰한 적이 있는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적이 있는가?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응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해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 참가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타 업체에게 낙찰 협조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특정 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해 특정 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특정 업체와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며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해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낙찰자 선정 협조의 대가로 낙찰자에게 사례금·특별회비·부과금 등을 받은 적 있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2.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2.2.1. 자율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경쟁계약의 수의계약 의도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특정 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수주물량 등 결정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타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방해 또는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한 적 있는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경영간섭 등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이나 특별회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정보교환 담합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고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정보교환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하였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2.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2.2.2. 공정위에 담합행위 신고 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 사실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2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상품·용역의 거래에서 생산·판매·출고·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 할당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 외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2.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2.2.2. 공정위에 담합행위 신고 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제40조 제1항 제5호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 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6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 하는 행위)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 할당을 타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을 제한할 것을 타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7호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 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입찰)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경매)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2.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2.2.2. 공정위에 담합행위 신고 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제40조 제1항 제9호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3. 거래 단계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자율점검

2.3.1. 거래 개시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기타의 거래거절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는가?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	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집단적 차별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차별을 설정하고 있는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 정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제외)하고 있는가?
위계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가?
거래방해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하는 조건으로 인기 없는 상품,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설정하고 있는가?
기타의 거래강제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배타조건부 거래	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 거래선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사업자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고 있는가?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3. 거래 단계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자율점검

2.3.2. 거래 계속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공동의 거래거절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는가?
기타의 거래강제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기타의 거래거절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제한하고 있는가?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는가?
집단적 차별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열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회의 경쟁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계속적 부당염매	당해 시장에서 경쟁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가?
일시적 부당염매	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는가?
부당고가매입	경쟁사업자나 신규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는가?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우선하여 판매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는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가?
구입강제	계속적 거래관계인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3. 거래 단계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자율점검

2.3.2. 거래 계속 단계

구분	점검 항목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
경영간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취급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거래/거래 상대방 제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기술의 부당 이용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 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인력 부당 유인·채용	거래상대방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거래상 대방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거래처 이전 방해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처이전을 방해하고 있는가?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 전단을 살포 하고 있는가?

2.3.3. 거래 종료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기타의 거래거절	자기의 제품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가?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4. 부당지원 행위 분야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수계약 가능 여부	• 해당 거래가 당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계열회사와의 거래인지?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인지? (i)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제조자와의 계약 (ii)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iii)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인지?
	• 거래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기업집단의 이미지 통일 및 표준화 계획 또는 경영 정책상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이거나 참가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재차 참여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인지?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사업기회 제공	• 상대방 계열사에 영업권, 영업상 중요 자산, 자회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거래인지?
	•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당사가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 당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지?
	•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4. 부당지원 행위 분야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가격의 적정성 여부	• 해당 거래가격은 정상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 정상가격: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한 가격 ① 비교 가격: 유사 상황에서 당사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 거래 시 적용된 가격 혹은 제3자 간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 ② 시장 가격: 객관적인 시장가격(가격지수, Index, report 등) ③ 평가 가격: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가격 ④ 비교 견적가: 타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견적 가격 ⑤ 기타 정상가격: 기타 정상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 ⑥ 계속 거래 시 전년비 계약금액 변동분·변동률 등 구체적 변동 사유 • 수의계약 건인 경우 거래 대상 계열사가 아닌 타 회사 견적을 통해 정상가격 여부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 계열사간 거래가격이 공정거래법상 안전지대[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연간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범위에 해당하는지?
효율성 존재 여부	•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 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① 전후방 연관관계인 계열사간 상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③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이를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④ 인적, 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⑤ 전문지식과 인력보유, 대규모·연속사업의 일부 또는 계약이행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하는 경우
보안성 존재 여부	• 해당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 보안성 예시 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②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4. 부당지원 행위 분야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통행세 거래	•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인지?
	•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인지?
	•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역할을 확보하고 수행하는지?
	•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당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실제 확보한 역할 대비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규명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기업결합
	•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경제력집중억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부당공동행위
고시·지침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 공동행위심사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심사절차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기타
고시·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 대한 경비지급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 공동행위 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기타
고시·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시스템(주) 컴플라이언스팀
- 개정판 발행연월: '25.12.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 (jangsw@hanwha.com/02-729-4929)앞으로 문의 바랍니다.